

**수사와 인권  
토론회**

2003. 12. 10.

**법무부 · 대검찰청**

# 목 차

## 수사와 인권 토론회

□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 14  
[이희주 (법무부 인권정책팀장)]

□ 수사과 형벌과의 관계인 인권과 사형의 개선방안 ..... 26  
[박희준 (중앙인권위원회 부위원장)]

2003. 12. 10.

□ 위대한 수사관들의 인권 ..... 35  
[서정환 (법무부 인권정책팀장)]

□ 범죄·제기죄의 인격과 고소 ..... 37  
[조남현 (법무부 인권정책팀장)]

### 제 3 부

□ 수사권에 보호를 위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 47  
[김 수 (한국일보 법조출판 기자)]

## 법무부 · 대검찰청

□ 의의 ..... 49  
[이현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 목 차

## 제 1 부

- 성폭력 상담을 통해 본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 1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경과 ..... 14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 28  
【박숙경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
- 외국인 수사 절차상 인권 보호 ..... 35  
【허윤진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위원장)】
-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그 보호 ..... 37  
【조균석 (피해자 지원센터 고문, 김천지청장)】

## 제 3 부

- 수사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 ..... 47  
【강 훈 (한국일보 법조출입 기자)】
- 피의사실공표죄와 수사사항 공표의 한계 ..... 53  
【이완규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성폭행·성희롱·성매매 등  
범죄수사법률제정의 필요성

이영민(법률전문인력)·김영희(법률전문인력)

**【제 1 부】**

**여성, 아동,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사 절차상  
인권보호**

# 성폭력 상담을 통해 본 형사사법절차상의 2차 피해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1. 시작하며<sup>1)</sup>

성폭력 범죄 피해자<sup>2)</sup>가 피해를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되찾는 데에는 주변의 격려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혹시 유발하지 않았나?”, “뭔가 당할 만 했겠지” 등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분위기여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고소 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sup>3)</sup>를 겪음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는 경험에 직면하게 된다. 형사절차상에서의 ‘2차 피해’ 문제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법적 해결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범죄 신고율을 낮추고 법적 해결에 대한 불신을 강화시킨다.

상담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면, 본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는 전체 피해자의 40-50%가 법적 문의를 해오고 있고, 스스로의 무력감을 극복하고 가해자의 정당한 처벌을 위해 법적 해결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 고소율은 13% 미만에 머물러 있고, 수사·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여성비하적 발언과 부당한 관행, 미비한 법적·제도적 피해자보호책들로 인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후회하거나 취하하기도 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성폭력 피해자나 이들을 지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무고나 명예훼손 등으로 역 고소를 당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2차 피해’의 문제들은 공정한 법적 절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개별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야기한다. 즉, 여성 피해자들이 경험하는 형사절차상의 제2의 피해는 법적인 ‘공정함’과 ‘중립성’의 결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의 침해이면서, 남성중심적 성 규범과 성문화를 기준으로 여성의 경험을 판단함으로써 여성의 자율권과 인권을 침해한다.

이 글에서는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를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 1) 이 글은 본 상담소가 2003년 법무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성폭력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성폭력피해 상담사례를 중심으로』의 일부를 요약한 것임을 밝힙니다.
- 2)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용어대신에 ‘성폭력 피해 생존자(survivor)’라는 용어의 사용을 제안한다. 왜냐하면 성폭력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수많은 생존자들은 피해로 인해 고통과 절망, 분노 등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과 용기를 갖고 있음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그 사실을 말조차 하지 못하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수사, 재판, 진료, 일상생활에서의 권리를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제1차 피해는 어떤 범죄나 사회문제가 발생해서 받은 피해이다. 제2차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거기에 관계된 사법기관, 가족, 친구, 언론, 여론 등의 소문이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에 의해서 피해자가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받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제3차 피해는 1, 2차 피해를 입고 적절하게 치유받지 못한 피해자가 반사회적, 비사회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Miyazawa, 1999).

기인한 2차 피해와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2. 형사사법 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발생 맥락

국가의 공적 절차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있는 그대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범죄자가 공정한 처벌을 받는 것은, 기존의 사법적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피해자 치유라는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다. 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로부터의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의미를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피해자는 피해를 부정하고 애써 은폐함에 따라 그것을 계속하여 반추하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근대 형사 소송법 체계에서는 이러한 피해자 입장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미하다.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한낱 주변적인 지위에 서서, 증거의 대상이 될 뿐이며 재판 결과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왔다.<sup>4)</sup> 그리고 피해자의 이러한 주변적 위치는 바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한다. 피해자가 이와 같이 주변적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서 비롯되며 두 번째로는 법·제도상의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분석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객관성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탈 근대적 사회과학과 여성주의에서 객관성은 이제까지는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없었고 그 체험이 은폐되어 왔던 주변인, 억압받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리게 하고 그들의 체험을 드러내는 데서 담보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2차 피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할 때, 2차 피해의 당사자들의 체험과 소리는 일차적인 특권적 자료가 된다. 즉 피해자들이 실제 고소과정에서 겪는 문제이며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대안을 마련할 때 비로소 2차 피해의 실질적인 축소와 근절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1)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과 태도에 기인한 2차 피해

성폭력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은 성폭력 사건 수사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가 해자가 보호받는 자로 역전되는 양상을 보여줄 만큼, 완고하고 강한 수사·공판 담당자의 성차별적 태도로 작용한다. 성폭력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의 통념은 현실의 형사사법처리 과정에서 성폭력 유무와 정도를 판단하는 거의 절대적 잣대가 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2차 피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 (1) 성폭력의 사적 문제화

성폭력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에게 뿌리 깊게 깔려 있는 성폭력에 대한 기본 통념은 성폭력은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라는 것이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2000년 경찰청에서 성범죄의 수사점수를 1점에서 3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력 범죄인 강간의 경우도 2002년도 기소율이 51.4%, 구속 구공판은 35.8%, 1심 판결 집행 유예율이 63.5%로 나타났다(대검찰청, 2003). 이것은 수사·공판 담당자들이

4) 한인섭(1994),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 보호 : 그 문제와 개선점”, 『피해자학 연구』, 제3호. 피해자학회, 42쪽.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통념을 여전히 일반적으로 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여성계는 피해자 인권 보호의 입장에서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며 폭력의 문제라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여성계의 이러한 주장은 일선 경찰·검찰계에까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여전히 성폭력은 개인적 영역의 문제이고 수사·공판 담당자들로서는 신경 쓰고 싶지 않은 사건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을 사적 문제로 보는 것은 필연적으로 성폭력을 법적 사건화 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린다. 즉 수사·공판 담당자들은 성추행, 강간미수는 물론이며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피해자에게 입힌 성폭력에 대해서도 법이 개재할 필요가 없는 당사자들의 문제로 치부한다. 당사자들의 사적 문제이므로 피해자의 고소를 접수하지 않으며 고소를 접수하더라도 미온적 수사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결국은 수사를 중단시킨다. 특히 추행이나 가해자 미상인 경우 수사 담당자들은 거의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조차 가해자가 성폭력을 인정했으면 되지 굳이 고소할 필요가 있는냐는 태도를 보인다. 정조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우세한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기대하며 법에 호소를 하지만, 아예 고소가 접수되지 않거나 수사관의 비협조로 수사가 제대로 진전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되거나 중단될 때 피해자는 이번에는 수사 담당자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셈이 된다.

## (2) 피해자 유발론

수사·공판 담당자에게 관찰되는 두 번째 통념은 '성폭력 유발의 책임은 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통념에 따라 이들은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떤 행태가 성폭력을 유발시켰는가를 찾는데 수사를 집중한다. 바로 여기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전도(顛倒)가 이루어진다. 즉 이러한 통념에서 자유롭지 못한 수사관은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 구조요청 여부, 옷차림과 음주 여부, 이전의 성력, 직업, 피해당시의 행위 묘사 등을 공격적으로 질문한다. 그리고 조사를 빙자한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공격과 비난조의 질문은 다른 수사관과 범죄자들이 드나드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의한 1차 피해 못지 않은 성적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낌을 호소한다.

수사관의 이러한 통념 앞에서는 여자가 밤늦게 거리를 걸은 것, 술을 마신 상태였거나 직장동료나 데이트 상대로 만난 가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것, 고객과 직업상의 만남을 가진 것 모두가 성폭력을 피해자가 유발한 근거('피해자는 원래 그런 여자다')로 해석된다. 가해자 집에 갔으면 간 것이 성폭력을 당해도 되는 근거로 해석되고 성폭력이 피해자 집에서 일어났으면, 가해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력을 유발한 책임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에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각기 구체적인 수사지침을 발표하고, 또한 수사관의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담당 수사관이 특별인권교육을 받는 조치가 내려지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통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 개인의 또 다른 번거로움과 의지를 요하는 사후 약방식의 이러한 조치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수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여 반영하는 분석 평가를 토대로 인식의 변화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와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 (3) 동의된 성관계론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부딪치는 세 번째 통념은 성폭력이 아니라 동의된 성관계라는 것이

다. 피해자들이 수사공판과정에서 가장 고통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바로 화간으로 몰린다는 점이다. 강간은 현저히 저항을 불능케 할 만한 폭력이 있었는가, 어떻게 저항하였는가를 피해자가 증명하도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해자가 평소에 알던 사람이라든가, 데이트 관계, 채팅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 그리고 폭력과 저항의 표시인 상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된 성관계와의 뚜렷한 구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연인관계였거나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 있다. 성폭력 이전의 이러한 정황이 성폭력을 무조건 동의된 성관계로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나, 수사 담당관들의 통념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심한 저항이 있었어도 아는 사람에 의한 성관계는 수사관들에 의해 동의된 성관계로 해석된다. 심지어 장기간 감금된 상태에서의 성폭력에 대해서도 상대가 유부남이면 간통으로 해석된다.

강간 후 도망쳐 나오지 못했거나 구조 요청을 하지 못했어도 가해자가 자기 차로 피해자를 피해자 집에 내려 놓아도 동의된 성관계로 해석된다. 또한 지속적 성폭력은 그 피해가 아무리 막중하더라도 지속성 자체가 동의된 성관계의 증거로 해석된다. 피해자가 스스로 혼란스럽거나 공포감이나 비난 받을 걱정으로 고민하다가 성폭력 사건 시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신고해도 이 신고의 지연성은 동의된 성관계의 근거로 해석된다.

성폭력은 대체로 화간이라는 수사 담당자들의 통념은 피고소인이 강력히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관들이 피해자의 고소 의도를 의심하는 쪽으로 작용하여 합의를 종용하고, 피해자를 무고의 가능성으로 위협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피해자는 화간을 강간으로 거짓 고소한 자로 내몰려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2차 피해를 당한다.

성폭력 여부를 저항 유무와 그 정도를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거의 물리적 저항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수사관들이 이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피해자들은 너무 놀라거나 당혹스러워서, 또는 저항을 함으로써 강간범을 화나게 만들거나, 실질적인 상해나 죽음의 위협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두려워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실질적인 힘이나 위협이 없는 경우에도 큰 체구의 남자 몸짓에 충분히 압도되어 저항하지 못하기도 하고, 공포 상태에서는 흥기가 아닌 것을 흥기로 속이는 가해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한다. 또한 약물이나 알코올의 영향 하에 있기 때문에 저항하지 못할 수도 있다(샌디아나 경찰청).

구조 요청 여부를 성폭력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역시 저항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갖는다. 피해자들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혹은 너무 놀라거나 창피해서 구조 요청을 못하기 십상이다. 설사 구조 요청을 해도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며 도와준 경우도 피해자의 구조 요청 행위를 증언해주는 거부한다. 이러한 성폭력 피해의 정황은 구조 요청 여부가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의 문제점을 분명히 드러내준다.

여성계에서는 성폭력 판단의 기준이 저항이 아니라 여성의 의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여성의 의사가 판단 기준이 되면, 성폭력 여부는 폭행, 협박의 수단으로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는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족하다. 성폭력 판단의 기준을 저항으로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강간 시도에 강하게 저항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시키고 자기 방어에 소홀한 점에 책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는 피해자의 대응은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에 극단적 저항하거나 무기력하게 당하는 폭넓은 스펙트럼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에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협박을 통하여 간음 행위를 하면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학계와 여성계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 (4) 가해자 옹호론



‘대부분의 성폭력은 동의된 성관계’라는 통념은 바로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라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화간이다’, ‘애인 사이다’라는 식으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드러내는 피의자의 말 한마디면 수사·공판 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라는 통념은 진실로 둔갑된다. 심지어 수사·공판 담당자는 강간은 젊은 건강한 남자의 애정 표현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피해자에게 강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라는 설득까지 한다.

형사소송법은 대부분 피고소인이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입장에서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의 이러한 특성과 수사·공판 담당자의 ‘억울한 피의자’라는 통념이 결합되면서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편파적이고 강압적인 수사가 진행된다.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은 위압적이고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일방적인 수사 태도를 견지하고 피해자의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반복 질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지치게 하고, 피해자의 사전 승인 없이 가해자와 대면시켜 피해자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며 가해자와의 합의를 중용한다. 또한 피의자가 입원 등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없는 경우, 수사·공소 담당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조사하는 과정 없이 피의자의 주장만으로 조사는 완결되기도 한다.

한편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르는 편파적 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태도에 그치지 않는다. 수사·공판 과정에서 최근 눈에 띄는 강압은 명예훼손과 무고죄 협박이다.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은 당연한 권리이므로 수사관은 합의에 대한 안내는 해줄 수 있지만 직접 간여하는 것은 가해자 측과 결탁하거나 그 입장을 비호하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수사관에 대하여 불신감을 갖게 하고 있다. 이외에 수사·공판 담당자들이 피해자를 간통자, 상습적 성매매자나 꽃뱅이, 정신병자로 모는 태도도 법률적, 심리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온다. 이러한 강압적 수사과정은 피해자 스스로 고소를 포기하게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으로 이어지고 편파적 수사는 매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는 행태로까지 발전한다. 피해자의 고소가 아예 접수조차 되지 않기도 하며, 피의자 부모가 사회 유력 인사인 경우 고소가 취하된다고 호소하는 상담사례도 있다. 편파적 수사는 피의자가 동의할 수 없는 진술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진술서 조작이라는 범법적 행태로까지 진전한다. 또한 피해자가 확보한 증거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듯 폐기 처분시킨 뒤에 합의를 중용하는 식으로 매우 적극적인 고의성을 갖고 사건을 축소·조작하는 심각한 행태도 관찰된다. 이러한 수사 과정 자체와 강제된 합의 또는 가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감내해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2차 피해이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비호의 의혹과 피해의식을 가중시키고 해당 조사관 뿐 아니라 법체계까지 불신하게 된다.

##### (5) 부적절한 증인 심문

피해자가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 돌입한다 하더라도, 이 단계에서 또 한번의 심각한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의 2차 피해는 피의자 변호인의 의뢰인 변호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적 공세에서 비롯된다. 상담 사례를 통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 측 변호인의 공세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변호를 위한 행위로 보아 넘길 수 있는 선을 넘어서 피해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범죄 피해 당사자로서 위로와 지지를 받고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 기회를 보장받기보다, 피해 사실에 관해 무고하였는지 혹은 범죄를 유발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 받게 된다. 공판 과정은 피해 사실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데 비중이 두어지고, 피해자 개인이 신뢰할 만한지가 우선하여 심리되며, 피해 결과가 사실로 인정되어서도 피해자가 유발한 부분은 없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것은 무고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형사 사건,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타당하게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대한 신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측의 피해자에 대한 공세는 공판 중인 사건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과거사 즉 성관계 이력(履歷) 등과 같은, 사안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행해진다. 이것은 결국 피해자의 성적 문란이나 방종 등의 혐의를 이끌어냄으로써 성폭력을 피해자가 유발했다는 식의 가해자를 위한 변호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다. 문제는 바로 이러한 전략이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다르지 않다는 데 있고, 바로 이 점에서 변호는 피의자를 위한 정당한 변론의 성격을 넘어서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성력 및 피해자의 학력과 직업, 평판, 가족관계 등 피해자의 성향에 대한 편견을 심어줄 수 있는 질문사항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폭력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데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질문들이다. 우리의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제299조의 관련 없는 신문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는데, 법문 상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위해 공판 진행의 절차적인 사항과 사건의 심리 자체에 관한 사항들에 관하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송지휘권, 법 제279조). 그 중에는 위의 제299조 불필요한 변론의 제한도 포함된다. 그러나 상담 사례들에서는 재판장은 성력에 관한 진술을 일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성력이나 기타 사생활에 대한 집중 추구는 성범죄로 인한 성적 수치감 못지않은 성적인 모멸감 및 굴욕감을 피해자에게 느끼게 하여 개인의 인격적 손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의 결과를 유발한 일이 있었는지에 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어져서, 피해자의 반항의 정도를 통해 화간의 성립여부가 살피지거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오인하게 한 여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행한 구체적인 반응이나 행동들이 규범적으로 평가된다. 피해자는 '기소된 피해자' 혹은 '피해 혐의자'로서 책임을 신문받게 되는 것이다.<sup>5)</sup> 심지어는 위의 피해자 반항 등으로 살피지는 폭행의 정도 등 강간범죄 등의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이 아닌, 정황증거 등이 피해자 책임을 묻는 근거로서 거론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들어지는 정황증거가 도리어 피해자의 유책사유를 살피는 데에 쓰이게 된다. 예컨대 성관계에 대한 승낙이나 묵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행동이나 피해자의 부주의한 행동이 있었는지가 문제시된다.

피해자에게 일정부분의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공판과정은 굴욕감과 수치심으로 위축되어 자기책임<sup>6)</sup>의 반응이 나타나고 피해 회복에 더욱 소극적이 되어가는 성범죄 피해의 특수한 심리적 외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피해자의 이러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성력에 관한 신문 금지 조항을 둔 강간 관련법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 등이 있다.

5) 신상숙(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제13호, 한국여성연구소.

6) "자기존중감(self-esteem)의 상실 : 강간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가 자기존중감의 약화와 부정적인 자기지각현상이다. 특히, '강간은 행실이 단정하지 못하거나 헛점을 내보인 사람에게만 일어난다'는 믿음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피해자의 경우에는 자기비판과 자기존중감의 비하가 더욱 두드러진다. 자기존중감의 비하는 자신의 신체적 자아, 사회적 자아, 그리고 정체감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자기존중감이 낮을수록 성폭행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강간 피해자들과 강도 피해자들을 비교했을 때, 강간피해자들의 자존감 수준이 더 낮았다"(Resick, P.A. (1993). The psychological impact of rap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 223-255; 조은경, 1995:78; 김제현, 1998)

## 2) 법·제도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2차 피해

### (1) 피해자 인격권과 신변 보호 제도의 부재

성폭력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 진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예, 자유, 사생활의 비밀, 신변 보호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피해자에 대한 수사·공판 과정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고 신변상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피해자의 인격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신변 또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변 안전에 대한 침해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신상 정보 유출과 가해자와의 대질 조사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 신상 정보 유출은 거의 모든 상담 사례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피고소인의 변호인에 의해 고소인의 주소 및 인적 사항이 유출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 3자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은 성폭력 피해가 가족, 이웃, 친척, 학원 친구들, 심지어 남편 직장에게까지 알려지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고 있고, 검찰 출입 기자가 사건을 기사화함으로써 신문에 학교, 동네 이름까지 나가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가족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피해자의 의사는 묵살되고 있다. 특히 피해 내용의 선정적인 보도는 피해자를 매우 광범위하게 사회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다.

한편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주소, 전화 번호 등이 알려짐으로써 합의를 중용받는 부담을 지게도 된다. 또한 친고죄가 아닌 성폭력의 경우 신고인의 신상 비밀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제3자의 신고율은 높아질 수 없고 이는 그만큼 취약 계층의 성폭력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현저하게 위협을 느끼는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 피의자와의 대면 심문 등은 피해자가 신변 위협을 느끼게 되는 피해 또한 초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1999년도에 '수사 및 공판 관여 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sup>7)</sup>을 발표하여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 피해자 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막고 신변 보호를 꾀하고자 했으나, 그 실효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 신상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법조문<sup>8)</sup>이 있으나 성폭력특별법 조항의 경우 담당 공무원에 의한 피해자 신상 공개만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과 그 주변인에 의해 피해자의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을 방안이 미비하다.

### (2) 증거 확보 지원 제도의 미흡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이 증거인 경우가 많다. 강간의 경우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쉽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힘들다. 치상이 없는 강간의 경우 정자 채취, DNA, 효소 검사, 임신, 출산 후 친자확인 등의 방법이 동원되지만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하는 경우 그 또한 성행위의 증거로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 재판주의가 사법체계의 골격이므로, 피해자로서는 일단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확보하는 데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성폭력 피해

7)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② 피해자 소환 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가급적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③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이유 등을 함부로 고지하지 말 것, ④ 부득이 소환장을 보내야 할 경우에는 봉합우편을 사용하도록 할 것, ⑤ 재소환에 대비, 피해자의 비밀보호에 편리한 장소를 조서에 기재할 것

8) 성폭력특별법 제 21조 1항,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8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등이 있다.

자는 조속히 의료적 조치를 통하여 신체적 상해를 치료하고 임신, 성병 예방을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위한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피해자가 증거 확보를 하기란, 많은 상담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쉬운 일이 아니다. 성폭력 피해자 진료에는 다른 환자보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법정에 출두하게 될 때 환자 진료를 못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손실도 크다. 또한 의료진이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혼란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는 진단서 발급이나 법정 증언이 요구되는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으려는 의료진들의 기피로 이 병원, 저 병원 옮겨 다니다가 증거확보의 기회를 놓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경우가 많다. 응급실로 가더라도 위급하고 다양한 질환과 상처로 복잡한 상황에서 큰 상해가 없는 성폭력피해의 경우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장시간 대기하기 쉬우며, 비전공자의 처치와 진단서 발급은 성폭력 피해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고 있다.

한편, 현 의료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경찰 병원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경찰을 동행하지 않는 한, 진료를 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로서는 당장은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고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도 증거는 확보해두고 싶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경찰 병원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235개소의 병원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긴급의료지원센터 7개가 운영 중이지만, 앞에 지적한 이유들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이상적인 의료 체계에서는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면 신속하게 접수처리가 되어 응급실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특별장소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공간으로 인도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의료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피해자가 동의하면, 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의료 조치 및 후속조치에 관하여 훈련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와 증거 채취, 진단서 발급 등을 담당해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 체계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이 강구됨으로써 이와 관련한 2차 피해는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3) 정보권 보장의 미흡

피해자는 수사·공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사건의 형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하여 알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의 부당한 공격 내지 책임 전가식 변호에 대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방어하고 형사 절차에 보다 효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음을 말한다.<sup>9)</sup> 그리고 이것은 피해자의 정보권이라 명명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상담 사례들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정보권은 거의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의 정보권에 대한 제약은 고소 출발 시점부터 발견된다. 피해자는 고소 후 경찰의 추후 통보를 기다려야만 하는데, 이 경우 수 주에서 수개월 심지어 10개월까지 아무 통보를 받고 있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사건이 접수조치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수사·공판의 전 과정에 걸쳐 진행 사항을 몰라 피해자들은 답답해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 진술 내용, 공판 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 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가 모든 것에 대한 정보권을 인정받아야 하나, 현실에서는 궁금해 할 뿐이다. 문의하면, '기다리라'는 말만 들을 뿐이며, 검찰은 때로는 고소인이 어리다는 것을 이유로 진행 상황을 알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고소인의 정보권을 무시한다는 사례들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정보권 제약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 결과를 낳기도 하며 이 결과에 대해 피해자가 속수무책인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가해자의 기소 사실만 알고

9) 한인섭(1994), 앞의 책, 45쪽.

있다가, 가해자가 피해자가 수궁하기 어려운 단기간의 실행을 살고 감옥에서 나온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다. 또는 증인 출석을 통보 받지 못해 피해자가 불참한 가운데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공판이 이루어져 성폭력 사건이 화간으로 둔갑되고 가해자의 무죄가 선고되기도 한 사례도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고지 제도는 검사의 수사종결처분(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사절차의 진행과정, 공판기일, 공판 절차의 진행, 공소취하나 공소장 변경 여부, 재판 결과 등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sup>10)</sup>

#### (4) 특수한 상황의 피해자에 적합한 수사 · 공판체계 미비

「범죄분석」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자 중 10대 여성 청소년 피해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아 성폭력도 가일층 증가 추세에 있다. 유아와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은 정신발달상의 심리적 특징이 성인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특히 성인 피해자에게도 심각한 정신·심리적 충격이 되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 그 충격이 유아와 청소년에게는 성인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심각할 수 있음을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유아와 청소년의 일상은 아동 학대와 같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성인의 보호와 배려 속에서 이루어지며 극심한 스트레스적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에 비해, 성폭력은 이들의 이러한 일상 체험과는 극단적으로 배치되며 때로는 적응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수준의 극단적인 부정적인 체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성년이 형사사법 절차 속에 들어오게 될 때, 미성년에 대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태도와 수사·공판 환경은 성인 피해자 때보다 훨씬 더 섬세할 필요가 있다. 상담 사례에서 미성년 피해자들이 받고 있는 2차 사례의 실태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미성년의 성장 발달 단계에 따른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수사·공판 체계가 시급히 요청된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공판 체계는 성인 피해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것을 중심으로 구축된 매우 성인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체계이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는 여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상담 사례를 통해서 미성년의 정신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태도와 그 체계가 어떻게 미성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낳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재하며 여기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미성년의 신체적, 정신적 감당 능력을 벗어나는 반복 진술과 증언,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나 증언, 보호자의 동석 없이 이루어지는 조사와 증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첫째로, 경찰, 검찰의 조사과정과 재판과정에 걸쳐 수 없이 사건에 대한 반복 진술이 이루어진다. 아이를 몇 시간씩 쉬지도 않고 10여 차례가 넘게 진술하게 하는 몰상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공판 검사의 교체도 반복 증언의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은 기억력이 쉽게 감퇴되며 부정적인 기억에 대한 심리적인 방어기제에 의해 반복될수록 앞뒤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반복 진술은 아동에게는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이 못된다. 더군다나 반복 진술이 강요되면서 아동과 청소년은 자폐증, 건물공포증, 대인공포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도 된다. 피해아동이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은 처음의 성폭력에 버금가는 형사사법 체계의 또 다른 폭력으로 2차 피해가 된다. 이 2차 피해는 단순히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2차 피해

10) 한국성폭력상담소(2003),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피해와 피해자권리」, 61-62쪽.

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온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로 확대된다, 이러한 2차 피해과정의 고통에 시달린 가족은 이사를 가거나 이민을 가기까지 한다.

둘째로, 피의자와의 대질 조사나 재판정에서의 대질 증언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는 미성년 피해자 부모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것이다. 특히 재판 단계에 이르면 이미 미성년 피해자는 이전의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몇 차례씩 반복된 조사로 심신이 지쳐 있거나 정신과 치료 중이다. 보호자는 이런 아동 또는 청소년을 피의자와 대면하는 법정에서 다시 세우는 것을 당사자와 부모 모두에게 참기 어려운 고문으로 경험한다. 정신과 치료중인 피해자는 피의자와 대질하자마자 기절해버린 사례가 있다. 이러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11조와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분리신문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모두 법정증언에만 한정되어 있어 수사과정에서의 2차피해를 막지는 못한다. 또한 법정증언시에는 실무상 분리신문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이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부적합한 조사/증언 방식의 예로 보호자의 동석 없이 조사와 증언이 이루어지는 것, 어른 중심적인 조사 방식 등을 들 수 있다. 이 역시 미성년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2차 피해를 초래한다. 미성년 피해자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조차도 위압적인 형사·공판 절차를 견뎌낼 정신적 능력이 부족하다. 대부분의 아동은 가해자를 보는 순간 증언은 커녕 겁에 질려 엄마 뒤로 숨어버린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1999년도 대검찰청은 미성년자의 수사·공판시 보호자 동반을 허용하는 피해자 보호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는 증인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퇴정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례들이 관찰된다. 예를 들면, 부모가 사주할 가능성을 이유로 부모를 배제한 채 9세 아동에게 진술을 받거나, 피고 변호사가 8세인 피해자 엄마를 포함한 모두를 퇴정케 하는 요청을 하자 판사는 이를 수용하고 있다.

다행히 2003년 11월에 있었던 성폭력특별법 제3차 개정안에서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해야한다”라고 다소 강제성을 띤 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사과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우려라는 부분의 결정은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진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는 피해대상도 여전히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 전면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성인 중심적 현장 검증이나 어른을 조사하는 식의 어법이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조사 등으로 미성년 피해자는 조사에 효과적으로 임할 수 없음은 심한 경우 또한 번의 상처를 입는다. 모욕적인 반복 진술을 감내하는 2차 피해를 겪으면서 성폭력과 관련한 것만을 기억하지 못하는 더 심각한 2차 피해에 빠지는 피해자의 모습, 그리고 부분 기억상실증에 빠진 이 피해자가 성폭력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피의자를 무혐의 처리하는 검찰의 모습은 경찰·사법계의 2차 피해에 대한 몰(沒) 감수성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사법계의 증거주의가 극도로 형해(形骸)화된 증거주의에 빠져 본래의 제 기능을 잃은 모습도 보여준다. 상담 현장 실무자들 그리고 일반인의 상식의 눈으로는 피해자의 기억상실증만큼 더 이상 분명한 성폭력의 증거는 있을 수가 없다. 피해자는 온 몸으로 성폭력의 증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성년에 적합한 조사/증언 방식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부재 외에도, 미성년의 정신적,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수사·공판 담당자들의 태도의 또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이 미성년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검사는 불필요한 보강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를 지연시킨다. 또 한 명도 아닌 초등학교 4, 6학년의 두 명의 가해자 목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동의 증언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 아동이 지목한 피해 날자에 피고인이 알리바이를 대면, 그 알리바이의 정확성을 수사하고 반복 조사

나 기억력 한계로 인한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보강 수사를 진전시켜야 하나, 가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아동은 자폐 증세로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 검찰계와 가해자간의 모종의 거래까지를 의심하며 경찰, 검찰계 전체에 대한 심한 불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실망은 심지어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환멸로까지 발전해 이민을 간 사례도 있다.

### (5) 가해자와 검사에 의한 역고소시 피해자 보호제도 미흡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고나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다. 물론 성폭력 고소인에 대한 무고나 명예훼손은 지금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지만,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역고소의 특성은 첫째, 성폭력 고소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명예훼손 역고소는 가해혐의를 부인하는 강한 수단이자 피해자들의 사건해결 노력을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로 악용된다. 둘째, 성폭력 고소이후 유죄판결 이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수사기관/재판기관에 자신의 무죄와 '피해'를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자들을 압박하여 합의 또는 협상의 카드로 악용한다. 셋째, 성폭력 유죄판결 이후에 역고소하는 경우, 가해자는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가 '2중 처벌'일뿐만 아니라 '가해자 인권'을 해치는 행위라고 제기하며 가해자에게 너그러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 한다.<sup>11)</sup>

상당 현황에 나타난 사례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측근 또는 피해자를 돕는 지원자가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행, 공갈, 협박, 기물 파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성폭력 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처리되면서 피고소인이나 검사로부터 무고로 고소당했고, 대자보 부착, 인터넷 실명 게재 등으로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의 경우 그 행위가 사실이어도 공언히 적시했을 때 피고소인의 입장이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며 공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 사실 여부가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데, 성폭력피해자는 실제 성폭력 사건으로 조사받음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관련법에 의거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전혀 받을 수 없으며, 피해자 혹은 고소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대부분 강압적인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매우 큰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역고소가 남발되지 않고 피해자가 부당한 역고소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

### (6) 처벌조항이 없음 외 기타

피해를 주장하다가 가해자측에 의해 폭행과 모욕을 당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성기노출, 엿보기, 스토킹 등 피해에 대하여 처벌조항이 없어 처리 못한다는 경찰의 태도에 실망하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이혼소송, 친권박탈과 호적 분리, 개명소송 등에 관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3. 맺 음 말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폭력 문제에 분노하고 대책을 찾는 것이 여성의 몫으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성폭력으로 인해 피해여성들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을

11) 장임다혜(2002),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발표",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민변여성인권위원회,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어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사랑이 방해 받는 상황임을 생각할 때, 성폭력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폭력 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 10여년동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전국에 117개의 성폭력상담소와 12개소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보호확대와 권리강화를 위한 법·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성폭력의 개념을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규정하고 강간죄의 객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의 강화와 아동, 장애인 등 특수 상황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수사·공판과정의 환경개선, 명예훼손과 무고 등 역고소시 성폭력 피해자 권리존중, 친고죄 폐지 및 보완 등이 요구된다. 또한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확대와 증거확보 지원, 성폭력 사건 전담제 실시 등의 피해자 지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정보권 신설과 공판절차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 형사사법 절차 담당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담당자의 성인지적 교육의 의무화와,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보완 및 징계절차 강화가 요구된다.

성폭력은 운 나쁜 몇몇 피해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느끼고 풀어가야 할 사회적인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은 절대로 순결을 잃었거나 인생을 포기할 정도의 큰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서, 그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애정어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사회도 성폭력 피해자들의 보호를 넘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시점이다.



#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추진경과

이영주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 1. 家庭暴力處罰 및 豫防對策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98. 7. 1.)
- 가정폭력사범 검찰수사시 범죄심리전문가 상담절차 활용방안 검토 지시 ('98. 7. 9.)
- 가정폭력범죄 사건처리에 관한 지시 ('98. 9. 4.)
  - 가정폭력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적극 처리
  -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족구성원과의 마찰과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경교육 실시
- 가정폭력 실태조사 및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실시('99)
- 「여성에 대한 폭력범죄 대책」 간담회 개최('99. 7. 7.)
  - 참석자 : 서울·경인지역 가정폭력전담검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소장,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등 10명
- 가정폭력범죄 전담검사제 확대실시 검토지시('99. 8. 2, 대검찰청)
  - 서울지검 시범실시를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실시
  - 가정폭력범죄 및 어린이·근친간 성폭력 등 제한된 범위의 성폭력범죄 전담
- 「가정폭력관련법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99. 12. 3.)
  - 법조인, 단체 등 각계 전문가 6명
-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2000. 8. 30, 대검찰청)

### ☞ **붙임 1**

- 가정폭력 행위자·피해자 수사절차상 민간상담기관 연계방안 시달 (2000. 9. 16, 대검찰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주 1-2회 서울지검의 지정된 장소에서 행위자와 피해자를 상

담하고 검사는 그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사건처리

□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교육과정 신설(2001. 10. 22.)

○ 법무연수원에 검찰(마약수사직) 6-9급 공무원 대상의 「여성관련범죄 수사실무반」 신설

□ 가정폭력사건처리 통계분류체계 보완(2001. 1.)

□ 가정폭력특례법 개정 (2003. 3. 19.)

○ 수사단계에서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 피해자의 수사기관에 대한 임시조치 요청권 신설

○ 검사에게 보호처분의 변경 · 취소 및 종료와 항고 등의 신청권 부여

□ 가정폭력관련 보호처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개최(2002. 9. 17)

○ 참석자 : 재경지역 보호관찰소 가정폭력담당사무관 5명

○ 주제 : 보호처분 집행현황, 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 性犯罪被害者 保護對策

□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실태 및 대책」 세미나 개최('98. 7. 6.)

○ 참석자 : 여성법조인 및 여성단체 대표 6명

□ 「성범죄수사및공판관여시피해자보호에관한지침」 시행('99. 2. 23.)

### ☞ 붙임 2

□ 신종성폭력 연구용역(2000)

○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폭력 · 원조교제,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 신종성폭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법적, 제도적 대안 모색

□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체계 구축(2001)

○ 성폭력범죄의 사건처리 통계분류체계 수립

○ 의료기관 체크리스트 서식화

□ 「성매매 방지대책 연구」 용역 실시(2001)

○ 성매매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와 성매매 수사절차상 형사사법적 대응체계 및 교육 · 복지대책 마련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와 성매매 근절을 위한 법 · 정책 방향 제시

□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시행(2002. 7.)

### ☞ 붙임 3

-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2002. 11. 21.)
  -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11. 25.)” 을 맞아 여성인권강화 및 폭력 피해 여성 보호 등에 대한 법조계, 수사기관, 국민의 의식변화를 촉구
- 여성범죄 수사상 문제점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 간담회 개최(2003. 2.)
  - 참석자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 대표, 대검찰청 연구관 등 검사 3명
-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에 관한 연구」 용역 (2003. 3.)
  - 목적 : 형사사법절차상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게 되는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심층분석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
  - 용역기관 : 한국성폭력상담소
-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관련 상담·보호시설 안내책자 배포(2003. 4.)
  - 전국 검찰청 배포, 1,600부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시행(2003. 6.)

### ☞ 붙임 4

- 여성범죄전담검사실 설치방안 의견 송부(2003. 8., 검찰국)

## 3. 수사절차상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Task Force

### □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관련범죄 수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 구성

정책수립 및 집행을 담당할 공무원, 정책을 제안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대학교수, 변호사, 의사, 여성단체관계자 등 총 25명  
(종합위원 9명, 각 분과별 자문위원 16명)

### □ 운영경과

- 2003. 7. 18. T/F 발족, 1차 회의
- 2003. 10. 29. 2차 회의(분과별)

- 가정폭력분과 안전 : 수사기관의 가정폭력 수사지침 이행확보방안
- 성폭력분과 안전 : 수사기관의 성폭력사건 수사지침 이행확보방안
- 성매매분과 안전 : 성매매 관련 선불금 사기사건 처리방안

○ 2003. 12. 4.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 분기별로 정기회의 개최(1월, 4월, 7월, 10월 둘째 금요일), 이메일 등으로 수시 논의

# 가정폭력사건 수사지침

## 1. 목 적

이 지침은 최근 가정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 7. 1.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형사사건처럼 처리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충실하지 않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가정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자 수립한 것임.

## 2. 기본 방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가정법원송치를 활성화하여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 이행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자 보호에 최선
- 경찰청의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 지침에 대한 일선 경찰의 실질적 시행 여부를 지도, 점검

## 3. 경찰 단계

-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제도 시행
  - 가정폭력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실정에 따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 또는 가정폭력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수사의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할 것.
  - 전담경찰관은 가급적 여자 경찰관이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지정
- 신고접수대장 비치, 관리 철저
  - 신고를 하여도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므로 필히 가정폭력사건 신고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경찰관이 신고자,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가해자, 피해내용 등 신고 내용을 기재하도록 할 것.
  - 유치장감찰시 위 신고대장에 대한 검사의 점검, 결재를 받도록 할 것.
- 응급조치 철저
  - 위 신고대장에 담당경찰관의 출동여부, 출동시 응급조치여부 및 그 조치사항 요지 등을 기재하도록 할 것.
  -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응급조치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할 것.

○ 임시조치 적극 신청

-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재발 우려시 피해자에게 필히 임시조치의 내용을 설명하여 주고 그 신청 여부에 관한 의견을 물은 다음 피해자의 요구가 있으면 가정폭력의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임시 조치를 신청하도록 할 것.

○ 상담소, 보호시설 활용 제고

- 가정폭력사건 신고 또는 수사시 피해자에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보호시설을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요구시 상담소 등에 인도하도록 할 것.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가와 상담하도록 권유하고 상담시 그 상담기록에 편철토록 할 것.

○ 입건 기준

-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건토록 할 것.

○ 검찰송치시 경찰의견 개진 활성화

- 송치서 비고란 및 의견서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상당한지 여부에 관한 담당경찰관의 의견을 가급적 기재토록 할 것.

4. 검찰단계

○ 검찰 수사지휘 단계

- 경찰이 임시조치를 신청할 경우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가 원하고 사안이 경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것.

○ 사건 송치후 단계

- 배당
  - 원칙적으로 가정폭력전담검사에게 집중 배당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할 것.
- 수사
  - 원칙적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동시 소환 조사하고 피해자의 가정유지 의사 여부 파악에 주력할 것.
  -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임시 조치를 청구할 것.

○ 사건 처리 단계

- 가정보호사건 처리 활성화
  - 가정폭력사건은 그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피해자의 의사, 가정의 평화와 안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송치할 것.
- 구약식기소 지양
  - 가정이 유지되는 사건의 경우 구약식을 하게 되면 그 벌금을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부

담하게 되므로 구약식기소 보다는 사안을 고려하여 가급적 가정법원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활용할 것.

- 기소유예 처분시 서약서 징구

- 기소유예 처분할 경우 당사자를 소환하여 피해자의 가정보호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었음을 강조하고 향후 재발 시에는 엄중 처벌 경고 및 자필서약서 징구할 것.

※ 구체적 처리기준은 추후 일부 일선 청의 가정폭력전담검사들의 의견을 취합, 검토 후 시달 계획

## 5. 참고사항

- 대검 강력 61100-1991호 (1998. 9. 1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시를 참고하기 바람.
- 가정폭력범죄 단속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발생시 먼저 신고를 받아 현장을 찾게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일선 청에서는 위 지침 내용 중 경찰단계 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유치장 감찰 또는 가정폭력전담검사가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해당 경찰을 지휘, 지도하여 주시기 바람.
- 경찰청에서 1999. 4. 경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구체적 수사방법에 관한 “가정폭력범죄 수사요령”이라는 지침을 수립, 일선 경찰에 시달하여 시행하고 있음.

# 성범죄 수사 및 공판관여시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290호, 강력 61100-413(1999. 2.23.)>

## 1. 목적

성범죄 피해자 수사 및 공판관여시 수사담당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사 및 공판수행 과정에서 성범죄로 인한 고통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

## 2. 수사 및 공판담당자의 기본자세

- 수사 및 공판관여는 엄정하게 시행하되, 성범죄로 커다란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더 이상의 고통이 가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진지하면서도 정중한 태도로 수사 및 공판에 임함으로써 피해자가 모욕이나 조롱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엄정 중립의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사자들로부터 수사 및 공소유지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하여야 함

## 3. 수사상 유의사항

### 가. 범죄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 범죄현장 또는 그 직후의 성범죄 피해자를 발견한 경우 범죄증거의 철저한 수집과 동시에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
- 정액, 체모의 채취나 상해 부위 및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의 몸을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양해를 구한 다음 의사 또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조사할 것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정신장애자인 경우와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에게 인계시까지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
-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 나. 피해자의 소환절차상의 피해자 보호

- 피해자 소환 전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가급적 피해자의 소환을 최소화하도록 할 것



- 피해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전화 등으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타인을 통하여 연락을 할 경우에는 피해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환이유 등을 함부로 고지하지 말 것
- 부득이 소환장을 발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봉합우편을 사용하도록 할 것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출장조사를 적극 활용할 것
- 재소환에 대비, 피해자의 비밀보호에 편리한 연락장소를 조서에 기재할 것

#### 다. 조사환경

- 피해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여 가급적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평온하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조사할 것
- 조사시 참여자는 가급적 여성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할 것
- 피해자가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 친지 등 보조자의 입회를 허용할 것
- 13세 미만의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자의 참여 하에 조사할 것

#### 라. 조사방법

- 피해자가 정신적인 원조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고 온화한 태도를 유지할 것
- 해당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격이나 성범죄를 당할 당시의 기분, 가해자의 사정 여부 등 피해자가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이나 공소유지에 필요하지 아니한 질문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삼갈 것
-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노골적인 호기심에서 비롯된 질문은 하지 말 것
- 수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가 범행의 동기를 유발했다는 식의 추궁을 자제할 것
- 모든 조사와 신문은 분리하여 하고 가해자의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급적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법을 택할 것
- 대질신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대질방법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것
- 특별한 이유없이 합의 또는 고소취소를 종용함으로써 특정 당사자를 비호한다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할 것

#### 4. 공소유지상 유의사항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신청하고,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 등 공소유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 사전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는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것
- 공판관여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만 신문할 것
-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지 말 것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특별한 필요없이 피해자의 성격, 과거 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질문을 할 경우에는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할 것

##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 및 공판시 유의사항

### 1. 목 적

- 청소년성매매 및 인신매매, 감금, 협박, 성매매행위자의 채무이용 등에 의하여 강요된 반인륜적 성매매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성매매 근절을 도모하고자 함

### 2. 성매매 관련범죄 수사시 유의사항

#### 가. 단속현장에서의 증거확보 철저

- 쇠창살, 잠금장치, 감시카메라 등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금 또는 감시를 위한 시설의 설치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 채권채무관계 증서, 근로조건관계증서, 관련 장부 및 일지 등이 있는지 확인 및 압수
- 성매매여성 중 청소년이 있는지, 타인 또는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소방, 전기, 구조물 등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항 확인 및 사진촬영

#### 나. 청소년성매매, 인신매매 등 반인륜적 성매매 관련범죄 엄단

- 반인륜적인 청소년성매매 및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하여 강요된 성매매 관련사범(업주, 알선업자, 불법 직업소개업자, 신분증 위조행위자, 청소년의 성을 산 자 등)은 끝까지 추적·필포하여 엄벌
- 청소년성매매 관련사범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소정의 신상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철저 수사
- 인신매매, 감금 등에 의한 성매매 강요사범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외에 감금, 부녀매매 등으로도 의율
- 소방, 전기, 구조물 등 안전과 관련된 불법사항은 소방법위반, 건축법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 병행

#### 다.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

- 업주 등에게 선불금, 벌금, 지각비, 식비, 의상비 등 명목에 상관없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후 이를 조서에 기재하고 채권관련 증서 임의제출시 소유권포기서를 받아 압수,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무효임을 고지

### 3. 성매매여성 조사시 유의사항

-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외에는 성매매여성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질문을 지양하고, 성매매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비난이나 저속한 표현 사용 금지
- 성매매여성이 보호자 등 신뢰관계가 있는 자의 동석을 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 친지,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등 보조자의 동석 허용
- 성매매여성에게 여성복지상담소나 긴급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원하는 경우 여성복지상담소나 긴급보호시설에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
- 선불금, 벌금, 지각비, 식비, 의상비 등 명목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채무는 무효이며 업주 등이 폭력배를 동원하여 채무변제 강요시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고지

#### 4. 공판시 유의사항

- 성매매여성에 대한 증인신청 및 증인신문은 공소유지에 꼭 필요한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성매매여성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 필요시 법원에 비공개 재판 요청
-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처벌의사 등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을 증인으로 신청하거나 성매매여성의 경력 등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신문하는 경우 법원에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

##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자 조사지침

강력 61100-732호 (2003. 6. 5.)

### 1. 목 적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수사기관의 중복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성폭력 피해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고 나아가 아동 성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2. 대 상

성폭력사건중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

### 3. 조사지침

#### 가. 전담검사 지정 운영

- 각 청에서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전담검사를 지정
- 전담검사는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에 대한 사경지휘 및 송치후 사건처리를 전담

#### 나. 사경의 사전보고

사경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 즉시 전담검사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

#### 다. 사경의 조사과정에 전담검사 직접 참석

- 전담검사는 사경의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과정에 직접 참석하여 수사사항을 지휘하고 필요할 경우 직접 보충신문을 행할 것
- 경찰 단계에서 가급적 피해아동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

#### 라. 진술 녹화

-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의 보호자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하고, 진술조서에 피해진술 녹화사실을 명기하도록 할 것
- 녹화 테이프에는 작성일자, 아동성폭력피해사건 지휘부(붙임 1)의 일련번호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라벨을 붙여 압수물중 귀중품에 준하여 보관 및 처리하고 전담검사의 지

휘를 받지 않은 열람, 반출 및 복사를 금하도록 할 것

- 필요한 경우 성폭력상담 전문가, 아동심리전문가 등을 조사과정에 참여시켜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도록 할 것

**마. 사건 송치시 朱印 및 녹화테이프 첨부**

사건송치시 기록표지에 붙임 2의 “아동성폭력피해사건”이라는 고무인을 주인하여 녹화테이프와 함께 송치하도록 할 것

**바. 증거보전절차 적극 활용**

미리 피해진술을 증거보전하지 아니하면 향후 재판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될 우려가 있거나 피의자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부동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할 것

**4. 행정사항**

- 본 지침은 2003. 6. 16.부터 시행
- 각 청은 자체 실정에 맞는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관내 사경에 시달하고, 관계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각 청은 붙임 1의 “아동성폭력피해사건 지휘부”를 작성하여 관리할 것

# 수사과정에서의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박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 1. 들어가며

올해 최고의 영화 '살인의 추억'은 우리나라 수사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열악한 수사환경에 의해 자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은 정신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협박등 갖은 수단을 동원한다. 겁을 먹은 용의자는 결국 허위자백을 하고 수사관은 현장검증 등 이를 뒷받침할 정황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 다행히 영화에서는 그가 진범이 아니었음이 다른 수사관에 의해 드러난다.

우연히도 지난해 최고의 영화로 꼽혔던 '오아시스'에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주인공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가족들은 그녀가 애인과 사랑을 나누는 상황을 '강간'으로 오인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언어장애가 있는 그녀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 당사자인 그녀는 진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애인은 강간범으로 교도소에 갇히게 된다.

기가 막히게도 영화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은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겪는 수사상 인권침해는 어떤 모습으로 벌어질까? 이 글에서는 최근 실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 2. 수사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1】** 수사기관의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침해사례

정신지체 3급이면서 자폐성향을 보이는 18세의 고등학생인 홍군은 수업시간중 학교근처를 배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2002년 11월 수업시간중 학교근처의 교회를 배회하다가 관리인에게 발견돼 파출소로 현장연행되었다. 관리인은 예전에도 교회에서 자판기 돈이나 성경책이 없어진 일이 있었다고 귀뜸했고 이에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홍군을 추궁하였다. 미성년자인 홍군은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자폐성향'이 있던 터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장애'가 있음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지만, 조사를 마칠 때까지 보호자나 학교로 연락이 가지 않았다. 겁을 먹은 홍군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나서야 연락을 받은 홍군의 어머니가 검찰로 찾아갔지만 검사는 어머니를 사무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현장범이 아닌 상황에서의 현장체포, 여죄추궁,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등 경찰의 납득할 수 없는 조사과정과 이를 토대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 어머니는 '인권센터'로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으며 결국 '기소유예처분'에 대

해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였다. 홍군의 어머니는 아무런 물증도 없는 상황에서 정신지체를 가진 미성년자의 자백만으로 '유죄판결'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져야 했는지 당시 상황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2】** “무리한 여죄추궁과 장애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H씨에 대한 수사상 인권침해”

성남 중부경찰서 강력계에 근무하는 김경사, 오경장, 최경장은 2001. 2. 21. 오전11: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의 한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던 한씨(23세, 남, 정신지체 2급)에게 다가가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무슨 의미인 줄 몰라 '네, 네'라고만 대답하던 한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신문하여 피의사실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고 진술서를 쓰게 한 후, 당일 현장검증 및 범행재연을 실시하고 하루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둔 후 2001. 2. 22. 20:30경에 석방했다. 그 후 검찰에 송치됐으나 2001. 5. 30 '혐의없음' 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검찰수사기록 중 의견서에 따르면, 1차례의 가정집과 4차례의 지하철 등 총 5차례의 절도행위를 저질렀다고 되어있었으나, 피해자로 유일하게 지목된 사람은 절도신고를 한 적도 없으며, 3만원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창문으로 넘어왔다고 하지만 창은 쇠창살이 설치되어 있어 사람이 창문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진술을 경찰에 했다. 그러나 의외로 경찰로부터 '위증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등 오히려 협박을 받아 도난부인의 진술을 목살 당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후에 인권센터에서 수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경찰의 조사내용중에는 피의자가 행했다고 하는 5번째 범행일시는 2001년 2월 21일 오전 11시경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시간은 피의자가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던 시간이었다. 이렇듯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으나 단순히 “자백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인으로 인정해 버린 것이다.

경찰서 인치 후 10시간 후에 집으로 연락이 와 부모님이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진단서를 보여 주며 다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인감증명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97년 진단서는 볼 것도 없다”면서 밀쳐내며 정신지체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족들이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려 했으나, 원본이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여 또 다시 거부하였다. 형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정말 정신지체 장애인인줄 몰랐다. 장애인을 왜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는가, 그리고 등록등은 왜 소지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목걸이 같은 표식이라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들은 본인의 자백을 받았고 경찰서에 와서도 자기가 알아서 진술서를 쓰길래, 정말 범인인줄 알았다고 말하며 그래서 불구속 상황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씨는 자폐성향을 보이고 있어 외형상으로 '장애'를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누구나 5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말을 자꾸 되풀이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하는 등 즉시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인권센터는 한씨의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 3인을 상대로 경찰청 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전말을 재조사하여 징계 내릴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사를 했던 담당관이 과정에서의 무리한 수사과 수사원칙에 어긋난 관행 등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올려 해당 경찰서에 세사람의 수사관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징계를 내리는 주체는 해당 경찰서였다.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경찰서는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마무리